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자등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등사권 준용
규정 정비〉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21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5.
3. 회 부 일 : 2024. 7.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제16조제4항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제1항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8조의3¹⁾ 및 제8조의4²⁾를 준용하도록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15호)」 제8조의3(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9조 및 제413조부터 제418조까지를 준용한다.
-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15호)」 제8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 ①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 또는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

○ 개정안에서 준용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과 “공판기록 등”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것임.

○ 안 제8조의3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관련하여,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3)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규정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등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9호)」 제294조의4(피해자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⑦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하고 있음.

-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4)까지의 사유 (이 경우 “소송기록”은 “서류등”으로 본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등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의4은 “공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관련하여,

-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5)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4)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③ 법원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하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한편,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9호)의 제294조의4제7항은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법

현행	개정안
<u>를」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u> <u>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u> <u>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u> <u>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u> <u>동”으로 본다.</u> ② (생략) <u><신설></u>	<u>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u> <u>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 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 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아 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 해아동”으로 본다.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6조⁶⁾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의 보충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로서의 변호인제도에 대한 특례로서 예외적으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16조제4항을 삭제하는 대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는 제17조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사 보관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판기록과 같은 기준으로 열람·등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안 제8조의3),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및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안 제8조의4) 하는 등 강화된 열람·등사권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인정하려는 것임. 따라서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5호) 및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게 되면 아동학대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열람·등사권에 추가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부여 및 불복 절차가 마련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에 대해 재판장이 조건부 허가를 하거나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피해아동 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 구제의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하여도 특정강력범죄⁷⁾ 피해자와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 등에 의한 축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동일한 수준의 강화된 열람·등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준용 규정의 속성상 대상 규정만으로는 무엇이 법령의 내용 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다른 법령 규정을 함께 보아야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개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의 실익과 수범자의 법규 이해의 편의성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7조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⁸⁾를 준용하는 현재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피해자나 변호사 등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이를 삭제하는 이유는 김도읍의원 이 개정안과 함께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8호) 제29조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⁹⁾.

문 의 처
02)6788-5059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418호)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29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본다.